

제 1535 호
1991. 1. 5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박 세 직
편집인: 공 보 관 유 천 수
전화: 731-6111~3
인쇄: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35-3337

시 보

차 례

◎ 조 례

제2679호	서울특별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4
제2680호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	4
제2681호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	5
제2682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	5
제2683호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폐지조례	5
제2684호	서울특별시태풍등재해로인하여대체취득하는부동산등에대한등록세과세 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	5
제2685호	서울특별시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불관입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 조례	6

(이면계속)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2487

제2686호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	6
제2687호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	7
제2688호	서울특별시신체장애자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	7
제2689호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	7
제2690호	서울특별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	8
제2691호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	8
제2692호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	8
제2693호	서울특별시중고자동차매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	9
제2694호	서울특별시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	9
제2695호	서울특별시공공사업수행시대채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취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	9
제2696호	서울특별시새마을사업지원읍위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	10
제2697호	서울특별시다가구주택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개정조례	10
제2698호	서울특별시철도건설공유지분분할등기에따른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	10
제2699호	서울특별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	10
제2700호	서울특별시전정기념사업회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조례	11
규 칙		
제2367호	서울특별시의민영점규칙개정규칙	11
고 시		
제 437 호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사업시행변경허가	13
제 440 호	도시계획사업(고속전철및부대시설)시행허가변경	13
제 441 호	서울창동지구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14
제 442 호	도시계획사업(전세버스여객자동차정류장)시행변경허가	14
제 1 호	도시계획동지구변경결정및도시계획시설(학교,도로)결정	15
구 고 시		
제 21 호	도시계획사업(개포제19근린공원)시행변경허가 (서초)	16

제 24 호	노지세목추가고시 (마포)	16
제 25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마포)	17
제 26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사업기간연기) (마포)	17
제 27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사업기간연기) (마포)	17
제 27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영등포)	18
제 28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사업기간연기) (마포)	18
제 29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사업기간연기) (마포)	19
제 30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사업기간연기) (마포)	19
제 33 호	도시계획사업(시장)변경시행허가 (강동)	19
제 40 호	도시계획사업(녹지)실시계획인가 (노원)	20
제 42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노원)	21
제 47 호	도시계획사업(학교)변경시행허가 (성북)	21
제 47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노원)	22
제 51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변경 (성동)	23
제 53 호	도시계획(도로)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 (성동)	25
제 53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송파)	27
제 56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송파)	27
제 1 호	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변경인가 (성동)	28
● 구 공 고		
제 109 호	공원시설(골프연습장)관리위탁 (성북)	28
제 110 호	도시계획사업(성북근린공원)실시계획공람공고 (성북)	29
제 224 호	주택개발제개발사업완료신고에따른지적공부시행 (은평)	31
● 시교육위원회고시		
제 54 호	학교시설사업준공	32
● 시교육위원회공고		
제 1 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시설강습소에관한조례개정(안)입법예고	32
● 사 령		
● 상수도사업본부 사령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지방
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이
에 공포한다.

1990. 12. 31

서울특별시시장 박 세 직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679호

서울특별시지방공사등에대한시세과세
면제에관한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사 및 공단
에 대한 운영여력 및 육성을 위하여 지방
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세과
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면제) ①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다음각호의 지방공사 및
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
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
하여는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중 민간출자
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 민간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12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증가세
대상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2.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3.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4.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공단의 법인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
제한다.

제3조(사무처리의 위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과세면제 사무는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과세물건을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4조(면제신청) ①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
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관계증빙
서류를 갖추어 관할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구청
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만, 구청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
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도시
개발공사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12. 31

서울특별시시장 박 세 직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680호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에대한시세과세
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에대한시세과세면

제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12. 31

서울특별시시장박세직

●서울특별시조례제2681호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12. 31

서울특별시시장박세직

●서울특별시조례제2682호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12. 31

서울특별시시장박세직

●서울특별시조례제2683호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태평동재해로인하여대체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12. 31

서울특별시시장박세직

●서울특별시조례제2684호

서울특별시태평동재해로인하여대체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폐지조례

서울특별시태평동재해로인하여대체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경인
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12. 31

서울특별시장 박 세 직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685호

서울특별시경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
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경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불균
일과세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중 "100분의 70"을 "100분의 40"
으로 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적용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취득하였
거나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도시
가스사업자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증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12. 31

서울특별시장 박 세 직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686호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시세과세
면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시세과세
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도시가스사업자에대한시세
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도시가
스사업자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민의 생활편의
도모 및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및 가스
도매사업자(이하 "도시가스사업자"라 한
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시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목 "(과세면제)"를 "(불균일과세)"
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1조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시세를 100분의 50
경감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예)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취득하였거
나 등기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재개
업구역내토지및건축물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12. 31

서울특별시장 박 세 직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687호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도시개발사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로 한다.

제1조중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자 재개발구역내"를 "도시개발사업을 촉진하고자 재개발구역 및 주거환경개선지구내"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재개발구역내에서 재개발사업"을 "재개발구역 및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1호중 "시행자"를 "시행자 및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 하며, 동조 동항 제2호중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 시행인가"를 "시행자 및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로부터 분양받아 취득하는 당해 재개발사업 최초 시행인가 및 주거환경개선계획 최초고시"로 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신체장애자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12. 31

서울특별시장 박세직

◎서울특별시조례제2688호

서울특별시신체장애자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신체장애자용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신체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제1조중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제2조중 "심신장애자"를 각각 "장애인"으로 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12. 31

서울특별시장 박세직

◎서울특별시조례제2689호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주택건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3월"을 각각 "2월"로 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을 취득일부터 2월이내에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12. 31

서울특별시장 박세직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690호

서울특별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이하 사회교육시설이라 한다)을 "사회교육시설"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중 "사회교육시설용"을 "다음 각호의 사회교육시설용"으로 하고, 제1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회교육법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교총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사회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등을 받아 설립된 비

영리 사회교육시설

5. 박물관법의 적용을 받은 박물관 및 준 박물관 시설
 동조 제2항 본문중 "사회교육시설"을 "제1항 각호의 사회교육시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12. 31

서울특별시장 박세직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691호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시행기간)중 "1990년 12월 31일"을 "199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12. 31

서울특별시장 박세직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692호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및그유족의주택구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시행기간)중 "1990년 12월 31일"을 "199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중고자동차매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12. 31

서울특별시장 박 세 직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693호

서울특별시중고자동차매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중고자동차매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시행기간)중 "1990년 12월 31일"을 "199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12. 31

서울특별시장 박 세 직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694호

서울특별시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태양열난방주택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시행기간)중 "1990년 12월 31일"을 "199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공공사업수행시대채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취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12. 31

서울특별시장 박 세 직 인

◎서울특별시조례제2695호

서울특별시공공사업수행시대채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취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공공사업수행시대채취득하는부동산에대한취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시행기준)중 "1990년 12월 31일"을 "199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새마을사업지원원유위안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12. 31

서울특별시장 박 세 직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696호

서울특별시새마을사업지원원유위안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새마을사업지원원유위안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시행기간) 중 "1990년 12월 31일"을 "199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다가구주택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12. 31

서울특별시장 박 세 직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697호

서울특별시다가구주택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다가구주택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적용례) 중 "1990년 12월 31일"을 "199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철도건설공유지분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12. 31

서울특별시장 박 세 직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698호

서울특별시철도건설공유지분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철도건설공유지분분할등기에 따른 등록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시행기간) 중 "1990년 12월 31일"을 "199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12. 31

서울특별시장 박 세 직 ㉔

●서울특별시조례제2699호

서울특별시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서울특별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적용시한)중 "1990년 12월 31일"을 "199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전쟁기념사업회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90. 12. 31

서울특별시장 박 세 격

◎서울특별시조례제2700호

서울특별시전쟁기념사업회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전쟁기념사업회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항(시행기간)중 "1990년 12월 31일"을 "1991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외국인영접규칙중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0. 12. 31

서울특별시장 박 세 격

◎서울특별시규칙제2367호

서울특별시외국인영접규칙중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외국인영접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외빈의 정의) 이 규칙에서 "외빈"이라 함은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원수
2. 행정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
3. 각료
4. 국회의원
5. 주한 외교사절
6. 지방자치단체의 장
7. 국제평화유지 및 친선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

제3조(외빈의 구분) 외빈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A급 : 국가원수 또는 이에 준하는 인사
2. B급 : 행정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 또는 이에 준하는 인사
3. C급 : 각료, 국회의원, 주한외교사절, 광역자치단체의장 또는 이에 준하는 인사, 국제평화유지 및 친선도모 등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인사
4. D급 : 제1호 내지 제3호의 인사외의 인사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적용배제) 외국의 국가원수, 행정수반, 각료, 기타 저명인사의 방문이라 할지라도 비공식 또는 사적인 방문일 때에는 제4조의 영접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영 집 기 준 표				
외빈의 구분 영집사항	A 급	B 급	C 급	D 급
행운의 열쇠 증정	증정	증정	소형증정	원칙적으로 없음
명예시민증 수여	수여	수여	증정가능	원칙적으로 없음
기념메달증정	증정	증정	증정	증정
선 물 증 정	증정	증정	증정가능	원칙적으로 없음
사 진	사진사수행, 기념사진첩 제작전달	사진사수행, 기념사진첩 제작전달	사진사수행, 시장초청의 경우에 한하여 기념사진첩 제작 전달	사진사 수행
꽃다발 증정	증정	증정	시장초청의 경우 및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증정	없음
시 장 소 개	방문자의 의 사에 따름	A급과 동일	A급과 동일	A급과 동일
연 회	오찬 또는 만찬	오찬 또는 만찬	오찬 또는 만찬(시 장초청의 경우 및 특별한 경우에 한함)	없음
영집위원회구성	구성	특별한 경우 구성	없음	없음
영 집 인	시장	시장	시장	외빈의 단위에 따라 결정
출영 및 환송	시장	시장	국장	과장
경호차 배치	경호차 및 모터사이클 배치	A급과 동일	모터사이클	없음
가르기 계약	양곡기 계약	양곡기 계약	없음	없음
수 기 배 포	양곡수기 배포	없음	없음	없음
시민환영대회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외부의 구분 영점사항	A 급	B 급	C 급	D 급
청사및가두장식	실시	없음	없음	없음
비탈기, 고무뽕 선, 색종이비산, 환영피켓	있음	없음	없음	없음
가두 환·영송 균중학생동원 및 악대동원	있음	없음	없음	없음
환경 정리	특별히 실시	실시	평상과 동일	평상과 동일
※ 1. 시장은 위영점기준 범위내에서 개별적 영점사항을 정함 2.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점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display: inline-block;"> 고 시 </div>		사 신축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간은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 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허가 고시합니다.		
◎서울특별시고시제437호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사업시행변경허가		2. 관계도서는 종로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 서울특별시 고시 제315호(90.9.19)로 도시계획시설(공용의 청사) 사업시행 허가된 종로구 구기동 139번지의 5필지 이북5도청가. 변경허가 내용		1991. 12. 29 서울특별시장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위치	종로구 구기동 139번지의 5필지		과 등	
대지면적	8,524㎡		과 등	
건축면적	2,088.37㎡		2,113.95㎡	
연건축면적	11,595.93㎡		11,581.85㎡	
◎서울특별시고시제440호 도시계획사업(고속철도및부대시설)시행허가변경		서울특별시 고시 제102호(82.3.9)로 사업시행허가된 지하철3,4호선 건설사업중 일부 부대시설사업(성모병원 환기구) 시행추진에		

있어 현재 지하권 보상비율이 확정되지 않아 보상시행이 곤란한 실정이므로 보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법 변경허가하고 동법 제2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1990. 12.

서울특별시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권적 또는 규모,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및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변경없음

나. 변경되는 사항

○ 사업의 준공연월일

당초: 1990. 12. 30

변경: 1991. 12. 31

◎서울특별시고시제441호

서울창동지구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변경승인

서울 창동지구 택지개발 사업 실시계획을 택지개발 촉진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1항 규정에 의거 변경 승인하였기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0. 12. 31

서울특별시

- 다 음 -

○ 실시계획 기간 변경

기 정: 1988. 2. 6 - 1990. 12. 31

변 경: 1988. 2. 6 - 1991. 12. 31

◎서울특별시고시제442호

도시계획사업(전세버스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변경허가

1. 서울시 고시 제209호(87.3.27)호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전세버스여객자동차정류장) 시행허가된 용산관광버스정류장 조성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허가 하였기 동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199 . . .

서울특별시

- 다 음 -

가. 사업시행지: 변경사항 없음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사항 없음

다. 사업시행규모

· 부지면적: 변경사항 없음.

· 건물연면적: 변경사항 없음.

(단, 일부시설 용도변경: 별첨)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변경전: 용산관광버스터미널(주)

대표이사 신영철

· 변경후: 용산관광버스터미널(주)

대표이사 송합배

마. 사업시행기간: 변경없음.

바. 수용 및 사용할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

세: 변경사항 없음.

사. 관계도서: 생략

충별. 시설별 용도변경내역							
층 별	시설 별	용 도 별	개 소	변 경 전	변 경 후	증 감 비 고	
지하2층	위락시설	보일러실(사우나)	1	169.05	15.20	-154.30	명칭변경
		특수목욕탕	1	0	154.30	+154.30	
		성인오락실	1	169.89	0	-169.89	
지하1층	판매시설	대중음식점	3	921.83	1,091.72	+169.89	
		위락시설	1	11.49	0	-111.49	
		공유시설		1,586.89	1,698.38	+111.49	

◎서울특별시고시제1호

도시계획용치지구변경결정및도시계획
시설(학교,도로)결정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용치지구 및 도시
계획시설(학교, 도로)을 도시계획법 제12
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규

정에 따라 변경결정 및 결정하였기 같은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
니다.

2. 관계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시설
계획과와 동작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0. 1

서울특별시정

가. 도시계획 용치지구 변경결정 및 도시계획시설(학교, 도로) 결정조서

구분	도시계획	위 치	기 정	변 경	증 감	비 고
변경	용치지구	동작구 대방동 23 일대	163,500㎡	83,226㎡	감80,274㎡	대방지구 일부 해제
결정	학교	동작구 대방동 산 13일대		12,000㎡		고등학교 1개소 신설
결정	도로	동작구 대방동 363		폭15미터		신설(중로2류)
		동작구 대방동 산13		연장626m		
		동작구 대방동 348		폭15미터		신설(중로2류)
동작구 대방동 37		연장282m				

나. 관계도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시설계획과와 동작구청 도시정비과
에 비치도면과
같음.

구 고 시

●서초구고시제21호

도시계획사업(개포제19근린공원)
시행변경허가

서초구 고시 제7호(90.7.18)에 의거 시행 허가한 바 있는 개포제19근린공원내 도시 계획시설(테니스장시설)에 대하여 도시공원 법 제6조와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동시행 령 제6조, 제7조의2, 제25조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시행변경 허가하였음을 고시합 니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공 원녹지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12.

서 초 구 청 장 ㉔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 동 236번지(개포 제19근린공원)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

다. 사업의 명칭: 개포 제19근린공원내 테 니스장 시설

라. 사업시행내역: 당초와 같음(변경없음)
마. 사업시행자: 동대문구 청량리1동 44- 11 최부길

바. 착공 및 준공:

1) 당초: 1990년 7월-1990년 12월 31일

2) 변경: 1990년 7월-1991년 6월 30일

●마포구고시제24호

토지세목추가고시

1. 마포구 고시 제10(90.4.30)호로 “도시계 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및 고시하고 관보 11518(90.5.8)호로 게재한 성산2동 58- 77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 토지 세목조서 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토목과나 건설관리 과에 비치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12. 29

마 포 구 청 장 ㉔

○ 사업명: 성산2동 58-77간 도로개설공사

토 지 조 서

지 번	지 목	면적(㎡)	소 유 자		비 고
			주 소	성 명	
마포구 중동 77-11	전	247	송파구 송파동 199 한양아파트 1동 807호	전 명 선	
마포구 중동 77-15	도로	109	송파구 송파동 119 한양아파트 1동 807호	전 명 선	
마포구 중동 77-19	대	1	도봉구 미아동 3-155	전 명 선	

●마포구고시제25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사업기간연기)

1. 마포구 고시 제11호(89.12.6)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된 신수동 380의 13-현석동 8의 2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0. 12. 29

마 포 구 청 장 인

- 다 음 -

가. 사업개요

- 1) 사업시행자 : 마포구 신수동 380의13-현석동 8의 2간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 명칭 : 신수동 380의 13-현석동 8의 2간 도로개설공사
- 3) 사업의 규모 : 폭 15m, 연장 35m
- 4) 사업시행자 : 마포구청장

나. 변경내용

- 1) 사업시행 기간연기
 - 당초 : 89.12.6-90.12.31
 - 변경 : 89.12.6-91.12.31

●마포구고시제26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사업기간연기)

1. 마포구 고시 제11호(89.12.6)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된 공덕동 384의 62-공덕동 378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0. 12. 29

마 포 구 청 장 인

- 다 음 -

가. 사업개요

- 1) 사업시행자 : 공덕동 384의 62-378간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 명칭 : 공덕동 384의 62-378간 도로개설공사
- 3) 사업의 규모 : 폭 8m, 연장 70m
- 4) 사업시행자 : 마포구청장

나. 변경내용

- 1) 사업시행 기간연기
 - 당초 : 89. 12. 6 - 90. 12. 31
 - 변경 : 89. 12. 6 - 92. 12. 31

●마포구고시제27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사업기간연기)

1. 서울특별시 고시 제573호(88.6.29)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된 마포구 대흥로 연장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0. 12. 29

마 포 구 청 장

- 다 음 -

가. 사업개요

- 1) 사업시행지 : 마포구 대흥동 328의 74-486간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 명칭 : 대흥로 인장공사
- 3) 사업의 규모 : 폭 20m, 연장 360m
- 4) 사업시행자 : 마포구청장

나. 변경내용

- 1) 사업시행 기간연기
 - 당초 : 88. 7. 20-90. 12. 31
 - 변경 : 88. 7. 20-91. 12. 31

●영등포구고시제27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 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0. 12. 28

영 등 포 구 청 장

- 다 음 -

- 1. 사 업 명 :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 2. 사업주체 : (주)대우 제3직장 주택조합, 중부1지구 지역주택조합, 동대문지구 지역주택조합
 -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규모
- 가. 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대림동 785번지

나. 대지면적 : 9,138.7㎡

다. 건축연면적 : 32,161.13㎡

라. 규 모 : 20층 2개동 280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마. 사업시행기간 : 90. 12-92. 12

●마포구고시제28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사업기간연기)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23호(88.3.26)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되고 같은 고시 제796호(88.9.29)로 변경인가된 마포구 마포동 301-407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0. 12. 29

마 포 구 청 장

- 다 음 -

가. 사업개요

- 1) 사업시행지 : 마포구 마포동 31-407간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 명칭 : 마포동 301-407간 도로개설공사
- 3) 사업의 규모 : 폭 6m, 연장 130m
- 4) 사업시행자 : 마포구청장

나. 변경 내용

- 1) 사업시행 기간 연기
 - 당초 : 88. 3. 10 -- 90. 12. 31

- 변경 : 88. 3. 10 - 91. 12. 31

●마포구고시제29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사업기간연기)

1. 마포구 고시 제14호(90.7.9)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마포구 도화동 185 주변도로정비 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0. 12. 29

마 포 구 청 장 ㉔

- 다 음 -

가. 사업개요

- 1) 사업시행지 : 마포구 도화동 185의 31-185의 26간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 명칭 : 도화동 185 주변 도로정비 공사
- 3) 사업의 규모 : 폭 4m, 연장 50m
- 4) 사업시행자 : 마포구청장

나. 변경내용

- 1) 사업시행 기간연기
 - 당초 : 90. 7. 9 - 90. 12. 31
 - 변경 : 90. 7. 9 - 91. 12. 31

● 마포구 고시 제30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사업기간연기)

1. 마포구 고시 제5호(89.8.16)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된 마포구 아현동 631의4-6간의 1개소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마포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1990. 12. 29.

마 포 구 청 장

- 다 음 -

가. 사업개요

- 1) 사업시행지 : 마포구 아현동 631의 4-6간, 623의 1-625의 1간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 명칭 : 아현동 631의4-6간의 1개소 도로개설공사
- 3) 사업의 규모 : 폭 6m, 연장 230m
- 4) 사업시행자 : 마포구청장

나. 변경내용

- 1) 사업시행 기간연기
 - 당초 : 89. 8. 16-90. 12. 31
 - 변경 : 89. 8. 16-91. 12. 31

●강동구고시제33호

도시계획사업(시장)변경시행허가

1. 서울시 고시 제3호(83.1.6)로 도시계획사업(시장) 시행허가되어 동고시 제379호(81.7.4), 동고시 제59호(85.1.30), 동고시 제25호(90.9.22)로 변경시행허가된 강동구 원효동 454-1호에 위치한 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동법 시행

령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권한위임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시장) 변경 시행 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제도서는 강동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12. 29
강 동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자 : 강동구 천호동 454-1호
 나. 사업의 종류,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사업(시장) 변경 시행 허가
 - 명칭 : 목산백화점
 다. 사업규모
 - 당초 : 15,522.64㎡
 - 변경 : 15,706.16㎡(증 : 183.52㎡)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강동구 천호동 454-1 목산홍업(주) 대표이사 최성원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83. 1. 6 - 90. 12. 31
 바. 사용 또는 수용합 토지조서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 권리명세 : 생략

◎노원구고시제40호

도시계획사업(녹지)실시계획인가

1. 노원구 공고 제305(90.11.26)호로 도시계획사업(녹지)실시계획 공람공고한 노원구 공릉동 29-30의 도시계획사업(녹지조성)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녹지) 실시계획 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 도서는 노원구 공원녹지와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와 건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12. 27
노 원 구 청 장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 규모	사업시행기간
노원구 공릉2동 29-30	도시계획사업4지구 녹지대조성공사 (추가)	녹지조성 536㎡	인가일로부터 91. 12. 31

가. 사업시행자 : 노원구청장
 나. 사용 또는 수용합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 아래

다.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아래

토 지 조 서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	소 유 자		관 제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노원구 공릉동	29-30	밭	536	김양택	노원구공릉2동230 현대(아) 16동 204호	-	-	

●노원구고시제42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변경인가

1. 노원구공고제28호(90. 2. 21)로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공람공고한 장월교-

성북역입구간 도로확장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와 같은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0. 12. 28
노 원 구 청 장

사업내용

사업시행지	사업종류 및 명칭	사업규모	사업시행기간		비고
			당 초	변 경	
월계동 472-4 -월계동 383 25간	도시계획사업(도로) 장월교-성북역입구간 도로확장공사	B=20m L=600m	89. 5. 1부터 90.12.31까지	89. 5. 1부터 91.12.31까지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변경없음)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건물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변경없음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 성명 - 변경없음

변경 시행허가하고 같은법 제24조 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12. 29
성 북 구 청 장

●성북구고시제47호

도시계획사업(학교) 변경 시행 허가

1. 서울특별시고시제185호(80. 5. 30) 같은고시 제278호(81. 7. 27) 및 같은고시 제140호(82. 4. 10)로 도시계획사업(학교) 시행허가되고 성북구고시 제26호(89. 12. 24)로 변경허가된 바 있는 성북구 정릉동 산 17-6 주변일대 성한학원의 도시계획사업(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 사업시행지 : 성북구 정릉동 산17-6 외 4필지 일대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사업(학교)

다. 사업의 명칭 : 성한학원(대일 중, 고교)
교지조성 및 시설증축

라. 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교지조성 및 진입로 공사

- 교지조성 : 7,467㎡

- 교사2층 1동 증축 : 6,293㎡

2) 운동장 확장

- 운동장 조성 : 7,600㎡

3) 체육시설 및 운동장 조성

- 운동장 조성 : 3,655.9㎡

- 체육관시설 1동 증축 : 3,300㎡

<p>◎성동구고시제51호</p> <p>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변경</p> <p>1. 건설부 고시 제768호(64. 1. 24)로 도시 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성동구 하왕 심리 839-597번지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성동구 공고 제135호(90. 5. 30)로 도시 계획(도로) 사업에 따라 공람 공고한 바 있는 도로에 대하여</p> <p>2. 도시계획법 제25조, 26조 및 시행령 제26조, 2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사업(도로) 실시 계획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며,</p> <p>3. 관계서류는 성동구청 토목과와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건물 소유자와 이해 관계자에게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0. 12</p> <p style="text-align: center;">성 동 구 청 장</p> <p>가. 사업시행지 - 하왕심리 779-1호~597-4호간</p> <p>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 3) 명칭 : 하왕심리 839-597번지간 도로개설공사</p> <p>다. 사업의 규모 - 폭 6미터 연장 200미터</p> <p>라. 사업시행자 : 성동구청장</p> <p>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인가일 '91. 12. 31까지</p> <p>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건물, 대지, 지번,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아래</p> <p>사.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 제43조 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아래</p>
---	---

토 지 조 서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수용또는수용면적(㎡)	토 지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토, 수법(제33항)의 관계인		비고
					주 소	성명		주 소	성명	
지				467	22건	22인				
1	하왕심리	581-3	대	34	하왕심리 581-1	박재준				
2	"	602-1	"	16	경기광주오포면 주자리 410	최복희				
3	"	601-3	"	22	하왕심리 601	박완규	소유권이전 청 구권 가등기	하왕심리207	이상도	
4	"	730-5	"	5	하왕심리 730-2	채경성				
5	"	750-6	"	19	하왕심리 730-3	최명철				
6	"	727-3	"	28	신당동 3	한명춘				
7	"	726-3	"	30	하왕심리 381-2	노철순				
8	"	726-4	"	7	중곡동 233-9	구우석				
9	"	597-5	"	2	하왕심리 597-4	김종운				
10	"	598-1	"	9	하왕심리 598	장세봉				
11	"	599-5	"	3	하왕심리 599-2	박순용				
12	"	732-1	"	15	하왕990 한신무학 아파트 5동 1203	한태용				
13	"	600-1	"	5	하왕심리 600	전득남, 이계순, 이경순, 이영순, 이인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수용표는사용 면적(㎡)	토지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토수법제43조의관계인		비고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14	하왕십리	773-1	주택	100	태평로 1가 64-8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육지재단					
15	"	776-1	대	3	태평로 1가 64-8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육지재단					
16	"	779-3	"	37	하왕십리 779	이병현					
17	"	806-8	"	18	하왕십리 806	이규신					
18	"	807-1	"	31	하왕십리 807	박성배					
19	"	808-3	"	48	하왕십리 808	박선우					
20	"	708-1	"	17	하왕십리 708	곽성숙					
21	"	731-1	"	9	하왕십리 731	장동환					
22	"	730-4	"	9	하왕십리 730-1	박완규					

건물조서

연번	지번	구조 (지붕/벽체)	주용도	층별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토수법 제43조의 관계인		비고
				층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계	18			160.9		18인					
1	하왕십리 581-3	목조초급	건물		28	화양동 36-31	박재문					
2	하왕십리 602-1	목조와즙	"		14	하왕 602	이연원					
3	하왕십리 601-3	"	"		2	하왕 601-2	박노중					
4	하왕십리 730-4	세멘트벽			10	하왕 730-1	박완규	소유권이전가등기 근저당권설정300만원 근저당권설정700만원 근저당권설정600만원 근저당권설정550만원	하왕십리 207 중구 성각동115 " " " " " "	이상도 한국아쿠르트		
5	하왕십리 730-5	목조와즙			1	중구 주교동 1-2	주희만					
8	하왕십리 730-6	목조와즙			1	하왕 730-3	최명철					
7	하왕십리 727-3	목조시멘트 와즙			20	하왕 580-4	박재수					
8	하왕십리 726-3	"			32	마장 381-21	노철순					
9	하왕십리 726-4	세멘트벽 세면와즙			7	마장 726-2	구우석	근저당권설정1000만원				
10	하왕십리 597-5	세멘트벽 세면벽	점포	2	2	하왕 590	김종운			중구 태평로 150 동향개발조합(주)		
11	하왕십리 599-5	목조초급	주택		3	하왕 599-2	박순용					
12	하왕십리 600-1	목조프레스트			5	하왕 500	전옥남, 이재순, 이정순, 이영순, 이인순					
13	하왕십리 732-1	연와조와즙			5	하왕 732	한태원					

연번	지 번	구 조 (지분/별세)	종류	층별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의의 관리명세	토수능치조각의 주 소 명	비고
				층	면적	주 소	성명			
14	하왕십리781-1	목조와급		4	하왕 542-40	장동환				
15	하왕십리776-1	연화조경옥 건물		6.3	중구태평로1 64-8	김태희 유지재단	근저당권설정 1979년 근저당권정기 1980년	태평로1가1 지단법인계단	국립은행	
16	하왕십리807-1	연화스라브 화정실		2.0	하왕 607	백성복				
17	하왕십리808-3	철 근 창고	3	2.1	하왕 808-1	백선옥				
18	하왕십리708-1	벽돌스라브 목조와급		16.5	하왕 646	이광식				

지 장 물 조 서

연번	동 명	지번	종 류	수 량	규 격	소 유 자	
						주 소	성 명
1	하왕십리	773	은행나무	5주	수관폭 : 1미터 수 고 : 2.5미터	태평로 1가 64-8	재단법인계단 국립은행계단
2	"	"	"	4주	수관폭 : 1.3미터 수 고 : 3미터	"	"
3	"	"	측백나무	3주	수관폭 : 1미터 수 고 : 2.2미터	"	"
4	"	"	농형평탄스	1식	높 이 : 1.8미터 연 장 : 5.2미터	"	"

◎성동구고시제53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 변경
고지

1. 건설부 고시 및 지적승인 제760호(64. 1. 24)호로 시험 결정된 바 있고,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고 제48호(90. 6. 12)로 도시계획 사업(도로)에 따라 공람공고 한 바 있는

도로에 대하여,

2. 도시계획법 제25조와 제26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사업(도로)실시 계획인가를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0. 12. 29

성 동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사 업 시 행 지	사 업 의 종 류	사 업 의 규 모 명 칭	규 모	비 고
행당동 128주변	도시계획사업 (도로)	행당동 128 주변 도로개설공사	B=6m L=28m	

<p>나.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p> <p>다. 사업확수 및 준공년월일: 인가일로부터 '91. 12. 31까지</p>	<p>라. 수용또는 사용할 토지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아패</p> <p>마.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아래</p>
---	--

토 지 조 서

지 번	지목	지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 의 권리명세	면적토지 (㎡)
			주 소	성 명		
행당동 128-869	대	36	강동구 암사동 강동 아파트 22동 308호	최종중		36
행당동 128-1220	"	7	행당동 117-26	박상호		7
행당동 135-20	"	3	행당동 135-2	석인용		3
행당동 128-870	"	52	행당동 128-870	한홍산		41
행당동 128-1190	임	3.2	행당동 128-7	백활기		3.2
		71.8	송파 송파동 95-43	문장철		71.8

건 물 조 서

지 번	구 조 (지붕/벽체)	주 용 도	층 별 면 적		소 유 자	
			층 수	층 면적(㎡)	주 소	성 명
행당동 128-869	기 와/ 세멘벽돌	주 거	1	21	강동 암사동 강동아파트 22동 308호	최종중
행당동 128-870	기 와/ 세멘벽돌	"	1	45	행당동 128-870	한홍산
	벽 들 담	"	1	1.2		
	철 대 문	"		2㎡×2㎡=4		
	철 계 단	"		0.5×2		
	차 양	"		4㎡×4㎡		
행당동 135-20	담 장	"	1	97㎡	행당동 135-2	석인용
행당동 128-1220	철 대 문	"		2㎡×2㎡	행당동 117-26	박상호
	은행나무			1주		

<p>●송파구고시제53호</p> <p>1990. 12. 22 송 파 구 청 장</p> <p>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변경승인</p> <p>- 다 음 -</p> <p>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p> <p>1. 사업명 : 가락동 법원 직장주택조합의 3개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2. 사업주체 : 법원 직장주택조합의 3개조합</p>																																									
<p>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th> <th>분</th> <th>변</th> <th>경</th> <th>전</th> <th>변</th> <th>경</th> <th>후</th> </tr> </thead> <tbody> <tr> <td>위</td> <td>지</td> <td>척</td> <td>송파구 가락동 161-1</td> <td></td> <td>좌</td> <td>동</td> <td></td> </tr> <tr> <td>대</td> <td>지</td> <td>면</td> <td>3,411㎡</td> <td></td> <td>좌</td> <td>동</td> <td></td> </tr> <tr> <td>건</td> <td>축</td> <td>면</td> <td>9,129.8㎡</td> <td></td> <td></td> <td></td> <td>10,105㎡</td> </tr> <tr> <td>구</td> <td></td> <td>모</td> <td>아파트 15층 1동 85세대</td> <td></td> <td>좌</td> <td>동</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위	지	척	송파구 가락동 161-1		좌	동		대	지	면	3,411㎡		좌	동		건	축	면	9,129.8㎡				10,105㎡	구		모	아파트 15층 1동 85세대		좌	동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위	지	척	송파구 가락동 161-1		좌	동																																			
대	지	면	3,411㎡		좌	동																																			
건	축	면	9,129.8㎡				10,105㎡																																		
구		모	아파트 15층 1동 85세대		좌	동																																			
<p>4. 사업시행기간 : 90. 8-1991. 12</p> <p>제획사업(도로)을 실시코자 송파구공고 제 143호(90. 12. 11)로 공람공고 완료하고,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본 사업을 인가하였기 고시합니다.</p> <p>2. 관계도서는 송파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p>																																									
<p>●송파구고시제56호</p> <p>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 계획 인가</p> <p>1. 서울특별시고시 제397호(90. 12. 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송파구고시 제49호(90. 12. 8)로 지적승인된 방이동 122의 3-122의 11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도시</p> <p>1990. 12 송 파 구 청 장</p>																																									
<p>가. 사업개요</p>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시행지</th> <th>사업의 종류 및 명칭</th> <th>사업의 규모</th> <th>사업기간</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방이동122의 3-122의 11간</td> <td>도시계획사업 (도로)</td> <td>B=6m L=28m</td> <td>인가일로부터 2년간</td> <td></td> </tr> </tbody> </table>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규모	사업기간	비고	방이동122의 3-122의 11간	도시계획사업 (도로)	B=6m L=28m	인가일로부터 2년간																															
사업시행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규모	사업기간	비고																																					
방이동122의 3-122의 11간	도시계획사업 (도로)	B=6m L=28m	인가일로부터 2년간																																						
<p>나. 사업의 시행자 : 송파구청장</p> <p>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p> <p>라.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p>																																									

토 지 조 서										
사 업 시 행 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실제 면적 (㎡)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비 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방이동122 외3-122의 11칸 도로 개설공사	방이동 121-1	공원	97.7	97.7	공원	서울시				

●성동구고시제1호

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
시행 변경허가

1. 성동구고시 제21호(90. 7. 6)로 도시계획
사업 시행변경 허가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장동 151번지 일대의 광나루 관광촌 일
단의주택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권한 위임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시행변경 허가하
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450-
1385)와 광나루 관광촌 일단의주택지 조성
사업조합사무실(444-6646)에 비치하고 토
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1. 1. 3

성 동 구 청 장

가. 사업의 시행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
장동 151번지일대

나. 사업의 종 류: 도시계획사업(일단의주
택지조성사업)

사업의 명 칭: 광나루 관광촌 일단의주
택지 조성사업

다.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

장동 151번지
광나루 관광촌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조
합 조합장 최순철
라. 변경내역
(1) 사업의 준공예정일: 90. 12. 31-91.
12. 31(기간연장)
(2) 기타사항: 변경없음.

구 공 고

●성북구공고제109호

공원시설(굴포연습장)관리 위탁

1.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산 87-1번지 북
한산 자연공원내 사설되어 있는 북악굴포
연습장을 도시공원법 제6조 2항에 의거 관
리 위탁허가 하고, 같은법 제6조 3항의 규
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
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공람한다.

1991. 1. 5

성 북 구 청 장

가. 위 치: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산 87-1

나. 공 원 명: 북한산 자연공원

다. 시설종류: 북악굴포연습장

라. 위탁관리자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918
 -1 흥태선
 마. 위탁사항
 1) 토지 : 32,505㎡
 2) 건물
 · 숙소 1동 258㎡
 · 변소 1동 15㎡
 · 관리사무실 겸 휴게소 1동 98㎡
 · 경비실 1동 55㎡
 3) 기타 : 타구소 및 부대시설
 바. 관리기간 : 1991. 1. 1-1991. 12. 31
 사. 관계도면 생략

2. 토지 및 건물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 함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관
 함합니다.
 3.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
 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건물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가. 공람장소 : 성북구청(토목과, 건설관리과)
 나.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1990. 12
 성 북 구 청 장

◎성북구공고제110호

도시계획사업(성북근린공원)실시계획
 공람공고

1. 서울시코시 제378호(90. 11. 12)로 도시
 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된 구민회관 전
 입토 확장공사(종로 2-1)에 대하여 도시
 계획사업(성북근린공원)실시계획 인가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27
 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 1) 사업시행지 : 돈암동 606-791~606-303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구민회관전입토
확장공사
- 3) 사업의 규모 : 도로확장, 폭 : 12m
연장 : 250m
- 4) 사업시행자 : 성북구청장
-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90. 4-91. 12. 31
- 6) 수용토지, 건물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 3항의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 8) 기타사항 : 의견 및 기타상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제출 또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입 련 번호	소 지 번	지 목	지 적	면 적	실 제 이 용 상 황	소 유 자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1	돈암606-792	임		168㎡	홍원사	돈암동 595		
2	돈암606-793	임		77	"	"		
3	돈암606-794	임		528	정해구회	종로구홍제동78-3		
4	돈암606-795	대		6	서울시			
5	돈암606-796	공		1	서울시			

입면 번호	소재지 번	지목	지적 면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종		소유권 이외의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6	돈암606-797	공		1㎡		서울시				
7	돈암606-798	공		106		"				
8	돈암606-799	공		6		"				
9	돈암606-800	공		2		"				
10	돈암606-801	공		50		"				
11	돈암606-802	대		13		"				
12	돈암606-803	공		20		"				
13	돈암606-804	공		21		"				
14	돈암606-805	공		22		"				
15	돈암606-806	대		19		"				
16	돈암606-807	공		25		"				
17	돈암606-808	대		7		국(채무부)				
18	돈암606-809	공		26		서울시				
19	돈암606-810	공		47		"				
20	돈암606-811	공		36		"				
21	돈암606-812	대		36		국				
22	돈암606-813	공		12		서울시				
23	돈암606-815	대		53		국				
24	돈암606-791	도		793		국				
25	성북동168-295	임		161		학교법인 문구학위	성북동 168-275			
26	성북동168-296	임		561		학교법인 문구학위				

입권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		소유인 이외의 권리 의 종류 및 내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27	둔암606-816	대	25㎡	국					
28	둔암606-817	대	23	국					
29	둔암606-814	대	70	국					
30	둔암606-251	대	40	서울시					
31	둔암606-252	공	73	"					
32	둔암606-253	공	99	"					
33	둔암606-285	대	50	"					
34	둔암606-288	대	43	이용길	중림구 묵동 240-190				
35	둔암606-303	대	43	서울시					

㉞은평구공고제224호

주택개발재개발사업원료신고에 따른
지적공부시행

은평구 용암동 용암5구역 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법 제24조, 동법시행
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규
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종전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동시에 새로이 조제된 지적공부
를 시행코자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게 보입니다.

- 아 래 -

종 전 토 지 (폐 쇄)			확 정 토 지 (신 조 된 지 적 공 부)				비 고
토지소재	지 번 수	면 적	토지소재	지 번 수	면 적	지 적 도 매 수	
용 암 동	4	6,240㎡	용 암 동	5	6,252.7㎡	1 대	증 12.7㎡

1. 공고기간: 1990. 12. 29 - 1991. 1. 12
(15일간)
2. 지적공부 열람장소: 은평구청 지적과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은평구청 지적과
(350-1495-7)로 문의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

해관계인은 위 기간내 서면으로 이의신청하
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이의가 없을시는
공고내용과 같이 지적공부 확정시행합니다.

1990. 12. 29
은 평 구 청 장

시교육위원회고시

●교육위원회고시제54호

학교시설사업준공

- 1.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고시 제58호('88.8.29)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예술고등학교 특별교실 및 무용실 증축공사가 준공되었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이 고시한다.
- 2.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관리국 시설과 및 서울예술고등학교 서무과에 비치하고 사후에 참고합니다.

1990. 12. 24

시 교육 위원 회 교 육 감

가. 준공사항

- 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217번지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서울예술고등학교 특별교실 및 무용실 증축사업
- 3) 사업의 규모: 교지면적 - 25.146㎡
건축면적 - 408.75㎡
건축연면적 - 2,243.98㎡
-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217번지 학교법인 이화예술 이사장
- 5) 사업기간: 1989. 4 - 1990. 11. 30
- 6) 준공도면: 도면생략

시교육위원회공고

●시교육위원회공고제1호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시설감습소에 관한 조례개정(안)입법예고

시설감습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종 국민에게 미리 알려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개정 조례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법률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1. 1. 5

시교육위원회 교 육 감

1. 개정취지

-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89. 6. 16 법률 제4133호)
- 동법률 시행령 개정('90. 3. 3 대통령령 제 12940호)
- 동법률 시행규칙 개정('90. 7. 30 문교부령 제 588호)
-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개정
- 사회교육 여건 변동에 따른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사회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별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1. 1. 2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새워서 작성)를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참조: 사회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사회교육과 (736-3219)
- 동부교육구청 사회교육과(232-7566)
- 서부교육구청 " (362-1729)
- 남부교육구청 " (633-8084)
- 북부교육구청 " (981-0619)
- 중부교육구청 " (763-1873)
- 강동교육구청 " (419-0018)
- 강남교육구청 " (546-5315)
- 강서교육구청 " (699-3626)
- 동작교육구청 " (814-9143)

주요개정내용

구분	개정내용	개정사유	비고
조례의 제명 및 용어 변경	<p>○조례의 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시설강습소에 관한조례 · 개정 :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조례 <p>○용어 “시설강습소”→“학원”</p>	<p>○상위법령의 제명 및 용어변경</p>	
시설설비의 제열별 교습과정별 기준 (제2조제4항)	<p>○실험·실습·실기등용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기준</p> <p>[별표1] 참조</p> <p>○주요개정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강의실 및 실습실) 면적 상향조정 · 현행 : 33㎡(10평) 내지 66㎡(20평) · 개정 : 99㎡(30평) 내지 198㎡(60평) <p>단, 신설된 컴퓨터 프로그래밍 과정은 강의실 198㎡(60평), 실습실 198㎡(60평) 이상으로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 · 종전 법률시행 규칙(문교부령)의 설비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 신설 교습과정 및 조정 필요과정의 설비는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안을 적용함 	<p>○종전 법률 시행규칙(문교부령)규정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p> <p>○자동차운전제학원의 시설·설비 및 반당 정원규정(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안) 반영</p> <p>○조정 필요과정의 시설·설비 기준 조정</p>	<p>*신설 교습과정 : 패션디자인, 컴퓨터프로그래밍, 비디오촬영기술, 산업디자인, 제과·제빵조수, 안경(7개 과정)</p> <p>*조정 교습과정 : 항공, 통신, 자동차(중장비) 정비, 자동차운전, 시계, 보석감정, 미용, 냉동(8개 과정)</p>

구분	개정내용	개정사유	비고
교육환경 정화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환경 저해업소가 있는 건물로부터 6m 이내 에 있는 건물에는 학원의 설립 불허 (현행 6m 이내의 조건 조항 삭제) ○ 교육환경 저해업소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인가청이 지정한 지역내에서는 미성년자를 주된 대상으로 하는 학원(교습소) 설립 불허(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교육환경 개선 ○ 청소년 지도 및 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건물간 6m 이내의 조건 "강습소와 교육환경 저해업소간 거리가 6m 이상이고, 건물 출입구간의 거리가 20m 이상인 장소는 제외한다" 삭제
동일 건물내에 동일 교습과정 학원의 설립 (제4조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건물내에서는 동일 교습과정의 학원 설립을 불허(현행) ○ 단, 대단위 아파트단지등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임시·점정고시 학원을 제외하고 공부상 연면적 3,300㎡ 이상의 건물로서 동일층이 아닐경우 3,300㎡ 초과시마다 1개소씩 신설할 수 있다. (신설 삽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습수요 충족 및 민원발생 요인 제거 	
학원의 규모 (제5조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설립 최저기준 면적 상향조정 · 강의실 33㎡ → 99㎡ (10평 → 30평) ○ 점정고시 학원의 최저 강의실 기준면적 하향조정 · 강의실: 99㎡ → 66㎡ (300평 → 200평) ○ 독서실 최대기준 면적 상향조정 · 열람실: 66㎡ → 99㎡ (200평 → 300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원의 진흥 육성 ○ 소규모 학원의 난립 억제 ○ 점정고시 수강생의 격감 ○ 점정고시 학원의 운영난 해소 ○ 점정고시 학원의 삼운영 유도 ○ 사회복지사업을 원하는 자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의실 최저면적 33㎡ (10평)는 60년대의 기준임

구 분	개 정 내 용	개 정 사 유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학학원·성인고시학원 최저 강의실 기준면적 상향조정 ·강의실: 198㎡ → 330㎡ (60평 → 100평) ○휴게실 면적을 학원규모에 비례하여 확보토록 규정 -현행령 제4조제1항 규정 “1일 수강자 500인(독서실 50인)이상 학원은 휴게실 16.5㎡이상 확보” -개정(신설) ·독서실 최초 50인 초과시 16.5㎡이상 그 다음 50인 초과시마다 6.6㎡이상 ·입시종합반 최초 500인 초과시 16.5㎡이상 그 다음 500인 초과시마다 9.9㎡이상 ·입시단과학원 및 기타학원 최초 500인 초과시 16.5㎡이상 그 다음 1,000인 초과시 3.3㎡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학원 불법과의 행위 근절 ○진전한 학원 운영 도모 ○교육환경 개선 ○수강생 편의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학학원: 이학실습실 필수 *성인고시학원: 7개과목 이상 강의
<p>학원의 명칭 (제6조의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정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학원”을 붙여 표시한다. 또한, 학원 명칭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명칭과 교습과정을 같은 규칙으로 표기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의 편의도모(혼란 방지) ○사회교육 질서 확립 	

구 분	개 정 내 용	개 정 사 유	비 고
학원의 교습시간과 부제교습 회수 (제6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원의 교습은 05:00~21:00 (성인 22:00) 까지 함. 단, 독서실은 교육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신설) ○학원의 부제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1일 1시간 기준 6부제 이하 -개정: 1일 1시간 기준 8부제 이하 단, 임시종합반은 1일 1부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 편의 도모 ○학원운영의 자율성 제고 ○학원운영의 활성화 도모 ○청소년지도 및 보호강화 	*현행 "지침"을 수정하 의 "조례"로 규정
교습과정별 반당정원 (제6조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교습과정별 반당정원 ○중전 법률시행규칙(문교부령)내용과같음 (별표 6)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전 법률 시행규칙(문교부령)규정사항 이 조례로 위임됨 	
임시학원의 교습과정 (제7조 제2항) 위치변경의 예외조항 추가(제7조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입시단과, 임시종합 구분 운영 ○개정: 입시(종합, 단과)로 통합 운영 ○동일 건물내에서 위치를 변경할 때에는 시설규모가 당초 인가받은 시설보다 줄지 않고 교육환경이 개선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행 최저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강생의 편의도모(지역별 교습수요충족) ○학원의 자율운영 제고 ○사회교육의 계속성 유지 ○지역 수강생의 보호 ○교육환경 개선 유도 	*현행 "지침"을 "조례" 로 규정
과외교습소의 규모 (제8조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학원의 최소규모 이하 ○개정: 과외교습소의 규모는 33㎡(10평)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외교습소의 본래 기능 유지 ○학원으로서의 본태 운영 예방 	
수강료 징수 (제12조제3항,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된 수강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1년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신설) ○수강료는 1월 단위로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습과정이 6월이상인 경우에는 교육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분기이자로 일괄 징수할 수 있다. 단, 분기별로 징수할 때에도 수강생의 형편에 따라 월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수강료를 반환할 때에는 수강하지 않은 월의 수강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강료 징수의 합리성 확보 ○학원운영의 자율성 제고 ○이용자의 편의도모 	*현행 "지침"을 "조례" 로 규정

구 분	개 정 내 용	개 정 사 유	비 고
<p>학원 설립·경영자의 연수 참석의무 규정 (제14조 제2항)</p>	<p>○ 감독청 또는 감독청의 위임을 받은 단체에서 실시하는 학원 설립·경영자 연수는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관할 감독청에 신고하여야 한다.</p>	<p>○ 영 제20조 제2항 규정의 구원 ○ 학원 설립·경영자의 자필향상 도모</p>	<p>* 연수·지도활동등을 통한 학원의 자율운영 제고</p>
<p>과태료 부과 (제15조 제1항)</p>	<p>○ "학원을 1개월 이상 무단 휴소하거나 재개 또는 폐쇄하고 지체없이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과태료 금액을 상향조정 - 현행 : 30만원 - 개정 : 50만원 ○ "교습소를 폐지하고 지체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만원"의 규정 삭제</p>	<p>○ 발칙조항 강화 ○ 준법 질서 확립 ○ 실효성 없는 조항 삭제</p>	
<p>학원에 관한 행정 처분기준 (제13조제1항)</p>	<p>< 학 원 > ○ 시설기준 미달(축소운영) : 1차 경고 → 휴원 ○ 인가외 교습과정 운영 : 1차 휴원(신설) ○ 수강료 기준액 초과징수 : 1차 폐원 및 고발(법 제18조 제2항) ○ 지도감독 거부 : 1차 휴원(신설) ○ 휴원 명령 불이행 : 폐원(신설) < 과외 교습소 > ○ 정원초과 : 1차 경고→경고 내지 교습 중지 ○ 신고 교습과정 위반 : 1차경고→폐지 ○ 시설위의 확장 운영 : 1차 중지(신설)</p>	<p>○ 현행 처분기준에 없거나, 또는 미비된 규정을 보완하여 불법·변태운영 학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 사회교육기관으로서의 정상적인 학원 운영을 유도함</p>	
<p>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교습수요 기준 (제4조 및 제8조)</p>	<p>○ 영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내 의미 1. 인가장은 동일개 학원(과외교습소)의 분포, 예상 이용자수, 규모등을 고려하여 관내 지역별 교습수요기준을 산정, 학원(과외교습)의 신설을 적절하게 할 수 있다. (신설)</p>	<p>○ 영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영 소래로 규정</p>	<p>○ 교육자치제 대비 ○ 지역별 여건 및 특성 고려</p>

사 령

◎1990년 12월 31일자 4급 공무원 전보 명 제443호

성 명	발령 사항	현 부 서	직 급
이상진	내무국 근무를 명함 비서관에 보함	문화부	서기관

◎1991년 1월 1일자 6급이하 기술직 공무원 전보 명 제444호

성 명	발령 사항	현 부 서	직 급
김길영	종합건설본부	청 소 2 과	지방토목기사
이규상	"	성 북 구	"
박종관	"	성 동 구	지방토목기사보
이택근	"	주차계획담당관	"
김상희	"	마 포 구	지방건축기사
황동준	"	전자계산소	지방전기기사보
이도희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	"	지방기계사
경기택	전자계산소	동 작 구	지방지적기사보
현중선	체육시설관리(사)	아 동 병 원	지방간호기사보

기능직 공무원 정규임용(10동급) 명 제445호

성 명	발령 사항	현 부 서	직 급
전경미	시정개발담당관 지방사무보조원 (조무)	시정개발담당관	지방사무보조원시보 (조무)
신은숙	총 무 과 "	총 무 과	"
김남용	" 지방통신원	"	지방통신원시보
오승권	" 지방방호원(방호)	"	지방방호원시보 (방호)
안홍선	" "	"	"
고광주	" "	"	"
김미경	인 사 과 지방사무보조원 (조무)	인 사 과	지방사무보조원 시보(조무)

◎1991년 1월 10일자 기능직 공무원 정규임용(10동급) 명 제446호

성 명	발령 사항	현 부 서	직 급
김하록	시정개발담당관 지방사무보조원 (집배)	시정개발담당관	지방사무보조원 (집배) 시보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임선옥	시 민 과 지방방호원 (경비)	시 민 과	지방방호원 (경비) 시보

◎ 1991년 1월 3일자 6급 공무원 전보 령 제477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조만구	동대문구	심사분석담당관	지방행정주사

◎ 1991년 1월 1일자 6급이하 대우공무원 발령 령 제478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이원희	5급(지방행정사무관)대우	감사 1 단 당 관	지방행정주사
김관영	"	구로부녀복지관	"
이정호	6급(지방행정주사)대우	예산담당관	지방행정주사보
김종환	"	전삼담당관	"
정동운	"	시 민 과	"
김정득	"	청 소 1 과	"
이갑현	6급(행정주사)대우	양 정 과	행정주사보
김광남	6급(지방행정주사)대우	문 화 계 과	지방행정주사보
박조준	"	국 재 교 류 과	"
장태숙	7급(지방행정주사보)대우	부 녀 복 지 과	지방행정서기
광영서	"	운 수 1 과	"
신정임	8급(지방행정서기)대우	공 보 관	지방행정서기보
박상오	6급(지방행정주사)대우	시 립 대 학 교	지방행정주사보
김용태	"	지 하 철 건 설 본 부	"
방원학	"	자 동 차 관 리 (사)	"
양대우	7급(지방행정주사보)대우	근 로 자 회 관	지방행정서기
최정식	7급(행정주사보)대우	자 동 차 관 리 (사)	행정서기
정희양	7급(지방행정주사보)대우	"	지방행정서기
박병길	8급(지방행정서기)대우	"	지방행정서기보

◎ 1990년 12월 27일자 5급 공무원 의원면직 령 제493호

성명	발령사항	현부서	직급
강연태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전자계산소	지방행정사무관

서울특별시장

상수도사업본부사령

◎1991년 1월 4일자

6급이하 행정직 진보

령 제162호

인비 번호	성 명	재		원		직	
		부	서	부	서	직 위	직
1	강석원	중부수도사업소		지방기업 행정주사	업무부경영과		지방기업행정주사
2	유창진	강서수도사업소		"	중부수도사업소		"
3	정철원	서부수도사업소		"	강서수도사업소		"
4	이득성	중부수도사업소		지방기업 행정주사보	업무부과장과		지방기업 행정주사보
5	김태권	수도자제사업소		"	중부수도사업소		"
6	이종필	은평수도사업소		"	"		"
7	전희남	중부수도사업소		"	서부수도사업소		"
8	조운계	업무부과장과		"	"		"
9	정종덕	영등포수원지 사무소		"	강서수도사업소		"
10	강태성	은평수도사업소		"	"		"
11	허철환	북부수도사업소		"	수도자제사업소		"
12	윤경도	강남수도사업소		지방기업 행정서기	업무부경영과		지방기업 행정서기
13	윤정숙	중부수도사업소		"	생산관리부 시설계획과		"
14	류광필	동부수도사업소		"	시설부시설과		"
15	조두업	강동수도사업소		"	중부수도사업소		"
16	지인기	강동수도사업소		"	"		"
17	임인숙	은평수도사업소		"	서부수도사업소		"
18	한경란	북부수도사업소		"	동부수도사업소		"
19	류병모	영등포수도사업소		"	은평수도사업소		"
20	류정상	업무부경영과		"	영등포수도사업소		"
21	최성리	생산관리부 시설계획과		"	"		"

연번	성명	발령	사항
3	조원필	지방기업행정서기보시보	3호봉 영등포구수도사업소
4	이은나	"	1호봉 중부수도사업소
5	추경민	"	3호봉 강서수도사업소
6	박상도	"	2호봉 서부수도사업소
7	전옥증	지방기업행정서기보	2호봉 동부수도사업소
8	김병철	지방기업행정서기보시보	5호봉 북부수도사업소
9	정윤호	지방기업행정서기보	5호봉 서부수도사업소
10	이문상	지방기업행정서기보시보	2호봉 중부수도사업소
11	김광호	"	3호봉 강서수도사업소
12	최서규	지방기업행정서기보	6호봉 서부수도사업소
13	이경숙	지방기업행정서기보시보	1호봉 서부수도사업소
14	김미경	"	1호봉 은평수도사업소
15	이윤재	지방기업행정서기보시보	5호봉 은평수도사업소
16	이기호	"	4호봉 서부수도사업소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별지 제2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노 도 현	소 속	성동구 건축과
		한자	魯 度 炫	직 명	지방건축기사보
	주 소	서울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505동 510호			

출석 이유: 진술 및 심문

출석 일시: 1991년 1월 16일 14시 00분

출석 장소: 시청 3층 기획상황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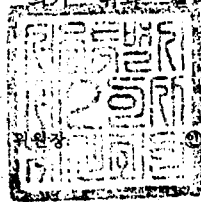
- 유의 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의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1991년 1월 4일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 위원장

귀 하
(철 취 신)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소 속	
		한자		직 위 (급)	
	주 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19 년 월 일

성 명

서울특별시 제2 인사위원회위원장 귀 하

출 석 통 지 서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김 남 중	소 속	성동구 건축과	
		한자	金 南 中	직 명	지방건축기사보	
	주 소	서울 성동구 중곡동 254-34				
	출석이유	진술 및 심문				
	출석일시	1991년 1월 16일 14시 00분				
	출석장소	시정 3층 기획상황실				
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의 진술권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사정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						
1991년 1월 4일 서울특별시 제2인사위원회 위원장						
귀 하 (절 취 선)						
진 술 권 포 기 서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소 속		
		한자		직 위 (급)		
	주 소					
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19 년 월 일 성 명						
서울특별시 제 2 인사위원회위원장 귀 하						